

건설업 면허주기가 올 연말까지 완전 폐지되고 중앙설계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현행 10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.

또 기술사 응시자격이 고교졸업후 13년 실무경력 이상으로 크게 완화되는 한편 신고만으로 건축가능한 단독주택규모도 100m<sup>2</sup>이하까지로 확대되는 등 건축 절차가 간소화되며 건축물 용도도 현행 32종에서 20여종으로 크게 줄어든다.

정부는 지난 5월 15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총 247건의 금년도 행정제도개선종합계획을 확정, 이 중 234건은 올해안에 개선을 매듭짓고 나머지 13건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.

## 건설교통부

### ■ 건설 제기준의 민간이양

[개선방안]

1. 건설기준의 작성·관리 권한을 민간단체에 이양

- 학회, 협회 등의 관련단체가 제정·개정권 및 판권을 보유

- 제정·개정내용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(위원장: 건설지원실장) 심의를 거쳐 확정

\* 건설기술관리법 개정('95. 1. 5 공포)시 민간단체가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2. 이양후 민간단체 주도하에 건설기준 정비 추진

- 낮은 기준은 통·폐합하고 신기술·공법은 추가

[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]

1. 민간단체 이양준비 : '95. 6. 30까지

2. 민간단체 이양조치 : '95. 4. 4분기

### ■ 건설업 면허체계의 개선

[개선방안]

1. 다원화되어 있는 건설업관련 면허체계를 관

## 정부, 행정제도개선

## 종합계획 주요내용

련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순화 추진

2. 외국업체 진출시 예상되는 마찰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건설공제조합 출자 및 협회가입 의무의 완화, 이국건설기술자의 인정기준 마련, 건설업면허의 수시발급, 도급한도규제제도의 완화 등 건설시장 개방대책 차원에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

3. 면허주기(매년 1회 실시)폐지

- 건설업법 개정과 병행 추진

[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]

1. 건설업제도 개선(건설업법 개정) : '95. 4. 4분기

\* 면허주기 폐지 병행추진

### ■ 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

[개선방안]

1. 책임감리에 대한 개념과 감리원의 업무한계를 공사시행단계별로 명확히 함.

2. 감리대가의 현실화 및 적정감리비의 안정적 확보 추진

- 종전 정부노임고시제도를 감리협회 등 관련단체 고시제도로 전환하여 시중노임 반영

3. 외국감리회사 참여제한제도 개선

- 대상공사를 현재 신공법 또는 저가낙찰공사

에서 감리대상 모든 공사로 확대

-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제 폐지

**[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]**

1. 감리대가 현실화 및 적정·감리비의 안정적 확보 추진 : '95. 3~12
2. 건설기술법시행령 개정 : '95. 3. 4분기

**■ 신기술 지정절차 간소화**

**[개선방안]**

1. 신기술 지정절차 간소화
  - 제출서류 간소화(내용·범위·활용계획 등 8종→4~5종)
  - 관보공람외 바로 보상과 연결되도록 하는 방안 강구

**[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]**

1. 건설기술법시행령 개정 : '95. 3. 4분기

**■ 설계심의제도 개선**

**[개선방안]**

1. 충분한 심의를 위하여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조정(100억원→200억원)
  - 지자체 발주공사는 모두 지방심의위원회에 위임

\* 중앙심의위원회 대상 심의건수 296건 중 101건(34%)위임

- 단, 대형공사의 시행착오 예방을 위해 국가개발계획과 연계되거나 폐기물 처리 등 공공성이 있는 공사로서 시·도지사가 요구하는 2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중앙심의 대상에 포함

2.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단계적으로 건설기술연구원에 위임하는 등 설계심의 내실화 도모

**[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]**

1.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 : '95. 3. 4분기

**■ 건축절차 간소화**

**[개선방안]**

1. 신고로써 건축이 가능한 단독주택의 규모를 현행 85㎡ 이하에서 100㎡ 이하로 확대
2. 사용승인시 일괄 신고할 수 있는 규모를 현재는 변경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50㎡ 이하로 되어 있으나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이 50㎡ 넘는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면적의 1/10 이내인 경우에는 일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

**[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]**

1. 건축법시행령 개정 : '95. 3. 4분기

**■ 건축물 용도에 관한 분류범위 축소조정**

**[개선방안]**

1. 현행 32종의 대분류를 유사용도를 통·폐합함으로써 약 20여종의 대분류로 축소·조정하여 허가대상 범위를 대폭감축
  - 용도분류체계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신종 용도의 출현시 적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

**[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]**

1. 건축법시행령 개정 : '95. 4. 4분기

**내무부**

**■ 소방행정제도 개선**

**[제도개선]**

1. 소방안전관리상 실익이 적거나 민간자율능력 배양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폐지·완화(폐지 14, 완화 23)

- 소방설비공사업 면허갱신제도(5년주기) 등 14개 규제사무 폐지

\* 폐지사무 : 소방설비공사업 면허갱신제도, 위험물 제조소 등의 용도폐지 및 지위승계신고, 소량위험물 저장·취급신고, 알칼알루미늄·알칼리등 운반신고,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승인, 소방시설 점검업 휴·폐업신고, 소방기계제조업 상속 및 휴·폐업변동신고, 소방설비공사업 상속 및 휴·폐업변동신고, 예방규정제정인가 및 공동방화관리규정 실행

고, 정원소방원 배치선정

- 건축허가 대상범위 축소조정 등 23개 사무  
완화·개선

① 건축허가 동의 : 동의대상범위 축소(연면적  
400㎡→600㎡ 이상, 소방시설변경 없는 용도변경  
은 동의대상에서 제외)

② 소방설비공사업시공신고 : 소방설비공사 시  
공자는 공사의 내용·시공장소 등 신고→비상벨,  
자동화재 탐지설비, 피난설비 등 경미한 소방시설  
은 제외

③ 소방서의 예방검사 : 연면적 33㎡ 이상 소방  
대상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화재예방 검사→민  
간전문업체 점검용 역시 소방서검사 면제

④ 소방용 기계·기구검정 : 소방호스결합 금속  
구 등 16개 품목 제외(48개 품목→32개 품목)

⑤ 방화차관리자 선임 : 대상범위 축소(600㎡→  
1,000㎡ 이상 1·2급 방화관리대상을 통합)

⑥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:  
교육주기연장(1년→2년)

⑦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 및 완공검사  
: 시험방법개선(수압시험→수압시험 및 비파괴시  
험, 충수시험→충수시험 및 비파괴시험, 지반검사)  
: 민간위탁(대형시설→소방검정공사, 중소형시설  
→민간성능시험업자, 완공검사→소방검정공단)

⑧ 소방시설 완공검사 : 민간감리업자에게 위탁

⑨ 도시가스·통신구·송유관 등에 대한 소방안전  
기준 : 강화

⑩ 기타 민원처리기간 단축(8건) 및 첨부서류  
감축(4건)

[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]

1. 소방법시행령·규칙 및 기술기준 등 개정 :

'95. 4. 4분기

2. 소방법 개정 : '96. 3. 4분기

## ■ 직업훈련체제의 개선·정비

[개선방안]

1. 공공직업훈련 체제의 개편

- 다기능기술자 양성체제 구축을 위해 직업전  
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 확대 개편하고 첨단공학  
과 신설

: 시설·장비가 우수한 직업전문학교 4개소(부  
산, 청주, 전주, 구미)를 기능대학으로 개편

: 생산자동화, 정보통신설비, 산업디자인 등 첨  
단학과 신설

: 연간 다기능기술자 양성인원을 '94년 960명  
에서 '95년 3,000명으로 확대

□ 기능대학 개편 및 다기능기술자 양성·공급계획

구 분	'9	'95	'98	'2000
기능대학 수(개소)	8	12	31	31
다기능기술자 양성·공급(명)	(960)	(3,000)	6,000	6,000

( )은 훈련중인 인원

2. 사업내 직업훈련의무제도 개편 및 직업능력  
개발사업의 적용

- '95. 7월 고용보험제의 실시에 따라 상시근로  
자 1,00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의무  
를 면제하고 고용보험의 능력개발사업을 적용하  
여 근로자의 생애작업능력 개발지원

: 기업의 양성·향상·재훈련 실시에 필요한 훈련  
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  
발을 위한 평생교육, 훈련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 
개발

: 2,000년까지 기업의 자율훈련정착을 감안하여  
훈련의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직업능력개발  
사업으로 통합

[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]

1.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개정 : '95. 2. 4분기

2.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을 위한 각종 법규 완  
비 : '95. 2. 4분기

## ■ 산업재해 보험수가의 현실화

## 노동부

[개선방안]

1.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서비스의 개선 및 실질적인 요양급여가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초과보철료와 의지·보조기의 수가를 일반관행 수가의 75% 정도로 인상

[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]

1. 요양비산정기준(고시)개정 : '95. 2. 4분기

■ 안정, 보건관리자 총원 유예기간 연장

[개선방안]

1. 안정·보건관리자 결원시 총원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20일에서 60일로 연장

[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]

1. 산업안전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 : '95. 3. 4분기

조달청

■ 입찰관련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

[개선방안]

1. 입찰자 담합사실여부 확인후 낙찰자 결정토록 개선

- 1차적으로 업체자율로 담합행위를 근절토록 기회부여(1. 4분기 중 계도실시)

- 입찰참가업체가 적은 대형공사위주로 단계적으로 담합행위 강력 처벌

- 입찰시 '담합사실여부'확인서 징구  
- 담합사실 허위확인 업체는 담합주도업체와 동일하게 강력 처분

2. 입찰시 대리투찰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토록 개선

-담합우려가 있는 PQ대상공사 등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상시투찰, 우편입찰 적용 배제

- 입찰장에서 입찰집행관이 배부한 입찰서로 투찰

[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]

1. 제도개선 및 시행 : '95. 2. 4분기

■ 건설자재 공급절차의 대폭 간소화

[개선방안]

1. 공급체계를 제3자 단가계약 방법으로 개선하여 수요기관에서 직접 납품 요구토록 함으로써 공급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소요일수를 단축

2. 납품전 선납제도→물품납품후 대금 징수

\* 레미콘·아스콘에 대하여 일정지역(제주·강원)시범 실시후 점차 확대

[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]

1. 제도개선 및 시행 : '95. 2. 4분기

■ 경쟁제한적 법령, 제도의 개선

[개선방안]

1. 현행 경쟁제한 규정이나 조치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조속 정비

- 보험업법·자동차운수사업법 등 50여개 법령을 대상으로 경쟁제한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

2. 단체·협회가 행하는 각종 규제 완화

- 경쟁제한적 정관 등에 대해 기시정조치 받은 한국관세사회 등 48개 단체의 이행 촉구

- 규제사항이 많은 대한행정서사회 등 60여개 단체를 추가로 선정하여, 소속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관련규정 및 정관 등을 정비

[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]

1. 50여개 법령상 경쟁제한제도의 운용현황 등 기초조사 : '95. 2~3

2. 경쟁제한사항의 구체적인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: '95. 4

- 경쟁제한 법령·고시·지침·관행 관련 사업자 단체 및 사업자 등

3. 실태조사결과와 종합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: '95. 4~5

4. 관계부처 협의 및 토론회 개최 : '95. 5~6

5. 개선방안 확정 및 시행 : '95. 7월 이후